

**【문】** 30여두 규모의 젖소와 그에 맞는 초지를 갖추고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. 초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 제도가 어떤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.

**【답】** 초지 상속에 관한 공제 규정은 현행 상속세법 제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낙농을 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초지에 더하여 농지나 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설명도 이에 맞게 해드릴까 합니다.

### 1. 상속공제

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(사망자)의 상속재산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.

- ①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초지.
- ②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(비과세, 임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도 포함됨)
- ③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6만평 이내의 산림지(보안림,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도 포함)

### 2. 피상속인

초지, 농지, 또는 산림지의 피상속인은 초지, 농지,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(서울특별시 직할시), 읍,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주소지의 인접지역(통장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)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(사망일)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, 또는 일부를 직접 고용하여 축산업(농업)에 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.

### 3. 상속공제액의 한도

초지·농지·산림지의 공제액은 다음의 공제액을 합하여 7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.

- ① 상속세 기초공제액 1천만원
- ② 상속세 인적공제액 ③ 주택 상속 공제액

### 4. 상속공제의 배제

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다음의 증여재산가액 중 위 1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.

「피상속인(사망자) 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.

### 5. 상속세의 추징

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축산업(농업)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.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- 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
- ② 양축(영농) 상 필요에 의한 교환·분합·대토의 경우.
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

- ④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양축(영농)에 공할 수 없는 경우

- 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초지 등이 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.

-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

-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.

-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축산업(농업)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. 이 경우 당해 상속가액 공제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.